

● 서울특별시 중구청 제2018-185호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4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67호(2015.8.10.)로 사업시행인가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6-44호(2016. 5. 10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4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『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』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일반인, 토지등 소유자,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를 공람하오니,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공람장소(중구청 도심재생과, ☎02-3396-5754)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3월 14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공람요지

가. 사업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4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
나. 사업위치 : 서울시 중구 충무로4가 131-6번지 일대

다. 시행면적 : 764㎡

라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

- 성명 : (주)성원애드피아 대표이사 정대원

- 주소 : 서울시 중구 퇴계로41길 6

마. 사업시행기간 : 기존 -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0개월

변경 -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6개월

바. 건축규모

구분	대지면적(㎡)	건축면적(㎡)	연면적(㎡)	건폐율(%)	용적률(%)	층 수(층)	높이(m)	용도
기정	602.90	379.42	5,909.31	62.93	669.27	지상12/지하5	45.90	숙박시설
변경	602.90	384.62	6,011.90	63.80	681.97	지상12/지하5	45.90	숙박시설

사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

아. 공람내용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4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변경인가 신청내용

자. 공람기간 : 2018. 3. 14. ~ 2018. 3. 28.

차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3396-5754)

카. 관계서류 : 생략(중구청 도심재생과 비치도서와 같음)